

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재진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담당 업무로 ‘산사태’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「산림보호법」 및 「사방사업법」에 명시된 ‘사방’을 함께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고, 시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(안 제4조),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(안 제5조, 안 제11조, 안 제15조)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